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3년 2월 일
발 의 자 : 김영래,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배명호, 이수경,
이화숙

1. 제정이유

○ 저 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의 근거 마련(안 제3조～제5조)

○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 시 보증재원 출연(안 제6조)

○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관계(안 제7조)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관계(안 제8조)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관련 부서와 합의 예산반영

다. 기　타

· 조례안예고(2013. 2. 28 ~ 3. 8) : 의견 있음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여 부	비고
성주 지역 발전 협의회	□ 대출자의 대출금리 부담 1%로 조정 ○ 대출자가 부담하는 이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리를 1%로 설정해 줄 것(ex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조건 참조)	반영(　　)　미반영(√)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시 개인의 신용, 담보 정도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1% 부담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이차보전기간 연장 ○ 이차보전 기간을 전체 대출기간으로 연장하여 줄 것	일부반영(√) 미반영(　　) ○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2012년 태풍 “산바” 피해 소상공인 한해서 이차보전 기간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1년 연장하여 일부반영	
	□ “산바” 피해 소상공인의 이중지원 가능 ○ 2012년 “산바” 홍수 피해로 인해 대출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반영(　　) 미반영(√) ○ 2012년 “산바” 피해 소상공인으로 이미 대출받은 경우에도 소급(이차보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중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위원회 위원수 증가 ○ 위원의 수를 15명으로 늘이고 그 중 10명을 민간에서 위촉할 것	반영(　　) 미반영(√)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당연직(공무원)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4명으로 이외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6명 위촉 구성할 수 있으므로 외부(민간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을 것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의거 성주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성주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4. “특례보증”이란 저 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장애인·노인·여성·장기실업자 등의 소상공인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은 연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 하였을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이외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계획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차액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청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5	숙박업, 단 생계형[1] 은 제외
56	주점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 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711, 712, 731, 86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8550	일반 교습 학원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 은 제외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9,4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숙박업(55), 주점업(56), 식당업(561중), 일반교습학원(8550), 무도장운영업(91291), 노래연습장운영업(91223)을 융자대상에 포함(단, 주점업 중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 제외대상 업종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기준 변동 시 변동기준에 따른다.